

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15일
신고인	명칭		
	주소 (전화번호: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사업소 명칭		
	사업소 주소 (전화번호:)		
	담당부서	담당자	
신고내용	승인번호		승인날짜
	변경내용		
	변경사유		

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.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	수수료 없 음	
처리절차			
신고 신고인	→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	→ 서류검토·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	→ 확인 신고인